

광양시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

의안 번호	4363
----------	------

2025. 10. 17.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 · 제출자: 2025. 9. 30.(화) 광양시장

나. 회부일: 2025. 9. 30.(화)

다. 상정일: 2025. 10. 16.(목)

- 제34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원안의결”

2. 제안 요지

가. 제안 취지

- 커뮤니티센터 내 수영장·목욕탕 운영 종료 및 시 청사 일부 배치에 따른 사업조항 정비
- 커뮤니티센터 이용료 감면사항을 정비하여 센터 운영 효율성·객관성 확보

나. 주요 내용

- 사업조항 정비 (안 제4조 및 제9조)
- 커뮤니티센터 이용료 감면사항 정비 및 구체화 (안 제12조제1항)

3.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광양시 커뮤니티센터 운영 구조 변화 및 행정 수요에 맞게 사업 조항을 정비하고, 이용료 감면 사항을 명확히 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관계부서 협의 등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령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답변 요지: 회의록 참조

5. 심사 결과: 원안의결(출석위원 7명)

6. 기타 사항

- 해당 없음.

광양시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민의 복지증진과 문화활동 향상을 위하여 설치하는 광양시 커뮤니티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광양시 커뮤니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내·외 시설 일체를 말한다.
2. “관리수탁자”란 센터 시설물 전부 또는 일부를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3. “관리수탁자 부담금”이란 관리수탁자가 부담하는 센터 운영 경비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제8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용료”란 제8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센터 사용수익을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이용료”란 센터 이용자가 센터 이용을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위치) 센터는 광양시 중마로 410(마동)에 둔다. <개정 2025. 7. 2.>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광양시민 문화·휴양 사업~~
1. 광양시민을 위한 문화·교육 및 복지지원 사업

~~2. 체력단련을 위한 운동사업~~

2. 일반 및 공공업무 수행지원 사업

~~3. 건강증진을 위한 목욕사업~~

4. 음식점, 슈퍼, 사무실 임대 등 수익사업

5. 그 밖에 설치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5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양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관리위탁한 경우에는 관리위탁 업무의 한계, 시설물 관리, 관리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기타 관리위탁조건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관리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한 번에 한하여 2년의 범위에서 관리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센터 운영비는 이용료, 관리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센터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관리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관리수탁자 선정) ① 시장은 센터를 관리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관리수탁 신청자에게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른 광양시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

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1. 11.>

제7조(관리위탁 취소)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리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센터의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운영을 하였을 경우
2. 센터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물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경우
3. 관리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계약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관리수탁자는 시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시설물을 반환해야 한다.

제8조(사용·수익허가) ① 시장은 센터의 사업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입찰을 통하여 센터 시설의 일부를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센터 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2회에 걸쳐 응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하며,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을 할 경우에는 한 번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① 제8조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 ~~1. 수영장, 목욕장, 헬스장, 스퀘시장 등 건강증진 시설~~
- ~~2. 다목적 홀, 영상실~~

② 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납부해야 한다.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2조에 따라 체육시설이용자를 위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료에서 공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감경)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1. 고용창출 및 실업해소에 관한 사무
2. 지역금융활성화 사무
3. 물류업 및 유통업 발전에 관한 사무
4. 투자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무
5. 지역 내 상공업의 종합적인 개선과 발전을 위한 사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제8조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센터의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운영을 하였을 경우
2. 센터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물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경우
3. 사용·수익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사용료 및 공공요금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시설물을 반환해야 한다.

제12조(이용료) ① 시장, 관리수탁자, 사용자 및 임차인은 센터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6.26.>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1. 이용료의 전액 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나. 시 또는 시의회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다.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

2.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위한 행사

-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을 위한 행사
 - 라.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를 위한 행사
 -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 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 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를 위한 행사
 - 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적용대상자를 위한 행사
 - 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 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 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 타.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3.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4.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공자~~

②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13조(공공요금 등) ① 관리수탁자 및 사용자(이하 “관리수탁자 등”이라 한다)는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과 관리용역비(이하 “공공요금 등”이라 한다)를 부담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공요금 등은 면적비율 또는 사용량이 측정 가능한 기기로 측정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면적비율 적용 시 수영장, 목욕탕은 50퍼센트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부과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공공요금 등이 납부기한까지 완납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채권관리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공공요금 등 산정은 별표 2와 같다.

제14조(공공요금 등 감면) 다음 각 호의 시설물 사용자에게는 공통 사용분 공공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수영장, 목욕탕, 헬스장, 스퀘어장 등 건강증진 시설~~

1. 문화·교육 및 복지지원 시설

2. 다목적 홀, 영상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5조(관리수탁자 등의 임무) ① 관리수탁자 등은 광양시민의 복지증진과 문화활동 향상을 위하여 다수의 광양시민들이 이용하도록 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해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 등은 이 조례와 계약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 등은 이용료 및 임대료를 센터 관리운영 경비 이외의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④ 관리수탁자 등은 회계 장부를 비치·관리하고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해야 한다.

제16조(공유재산 사용) ① 관리수탁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 등은 관리수탁(사용·수익)재산을 센터 운영목적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관리수탁자 등은 관리수탁(사용·수익)재산의 시설물을 변경 또는 보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관리수탁자 등은 약정 기간의 종료 또는 중도 해지될 경우 일체의 영업행위를 중지해야 하며, 시설물을 원상으로 회복해야 하고, 이를 이유로 시장 또는 제3자에게 시설 투자비와 어떠한 형태의 권리금도 요구할 수 없다.

제17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 ① 관리수탁자 등이 센터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 현물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 등은 관리수탁(사용·수익)재산의 손해보전 및 이용자의 신체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손해보

험 가입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일괄하여 손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③ 센터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동일한 현물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배상해야 한다.

제18조(회계 및 결산) ① 관리수탁자는 다음연도 센터운영 사업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센터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관리수탁자가 부담해야 하며, 센터 운영으로 생긴 이익금은 적립한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운영 및 시설에 재투자해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가 검사한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9조(보고 및 감독) ① 시장은 센터 운영 관련 장부와 서류 또는 그 운영사항 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거나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이나 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1. 11.>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현 행

이 용 료 (제12조 제2항 관련)

1. 건강증진시설 이용료

(단위: 원/부가세포함)

구 분		1일 이용 요금(원)	회원 이용 요금(원)			
			월회원	3개월	6개월	
수영장강습료 (이용료 별도)	성 인	-	15,000	35,000	65,000	
	학 생	-	12,000	30,000	50,000	
수영장	성 인	3,000	50,000	135,000	240,000	
	학 생	2,000	35,000	94,500	168,000	
	가임 여성	성인	-	45,000	121,500	216,000
	학생	-	31,500	85,000	151,200	
대중탕	성 인	5,000	87,000	221,000	417,000	
	초 등	4,000	-	-	-	
	유 아	3,000	-	-	-	
헬스장	성 인	2,000	30,000	81,000	144,000	
	학 생	1,500	20,000	54,000	96,000	
스쿼시장		5,000/1회	60,000	162,000	288,000	
연계형 (수영장+대중탕+ 헬스장)	일 반	-	97,000	247,000	465,000	
	가임여성	-	87,300	222,300	418,500	

- ※비 고: 1. 이용료는 10% 범위에서 가감하여 징수할 수 있음.
 2. 학생은 고등학생 이하를 말함.
 3. 가임여성은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또는 생리를 확
 인 할 수 있는 진단서(소견서 포함)를 제출한 여성을 말함.

2. 다목적홀 이용료

(단위: 원/부가세포함)

시설물명	기준	이용용도	이용료	비고
다목적홀	1회	결혼식	300,000	1회 1시간 기준
		결혼식 외	120,000	1회 2시간 기준 시간 초과 시 시간당 50,000

[별표 1] - 변경안

이 용 료 (제 12조 제 2항 관련)

(단위: 원/부가세포함)

시설물명	기준	이용료	비고
다목적홀	1회	120,000	1회 2시간 기준 시간 초과 시 시간당 50,000

(별표 2) - 현 행

공공요금 등 산정 (제13조제4항 관련)

구분	산정기준	비고
공공요금	◆ 공공요금액 / [개별 임대면적 + (수영장 임대면적 × 1.5) + (목욕탕 임대면적 × 1.5)]	면적비율 적용 시
공공요금	◆ 개별계측분요금 + 공동사용분요금 / [개별 임대면적 + (수영장 임대면적 × 1.5) + (목욕탕 임대면적 × 1.5)]	계측 기기 적용 시
관리용역비	◆ 미화원·경비원 관련 용역 인건비총액 / 전체면적 × 개별 임대면적 / 12개월	

※비 고: 1. 면적비율 및 계측기기 적용을 공공요금별로 병용하여 산정할 수 있음
 2. 별사용분과 공동사용분에 대한 면적비율 부담분을 합산하여 산정함.

(별표 2) - 개 정 안

공공요금 등 산정 (제13조제4항 관련)

구분	산정기준	비고
공공요금	◆ 공공요금액 / 개별 임대면적	면적비율 적용 시
공공요금	◆ 개별계측분요금 + (공동사용분 요금 / 개별 임대면적)	계측 기기 적용 시
관리용역비	◆ (미화원·경비원 관련 용역 인건비총액 / 전체면적) × 개별 임대면적 / 12개월	

※비 고: 1. 면적비율 및 계측기기 적용을 공공요금별로 병용하여 산정할 수 있음
 2. 별사용분과 공동사용분에 대한 면적비율 부담분을 합산하여 산정함.